



새찬송가위원회 보고

제107회기 새찬송가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김정훈

1. 조 직

- 위 원 장: 김정훈 목사
- 회 계: 이홍렬 목사
- 서 기: 윤두태 목사
- 위 원: 김종준 목사 서기영 장로 조경행 목사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2022. 12. 19.(월) 12:00

☞ 장 소: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출판권 대법 승소와 이사가처분 고법 최종 승소 되었으나, 현재 진행되는 형사 건에 대해서 보고받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다.
- ② 2022년 12월 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공회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4인 미팅(김정훈, 김종준, 오창우, 손인선)에 대해서 보고 받다. 개편위 이사들은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해산을 원하며 오창우 이사장 역시 동일한 의사임을 확인하다. 한국찬송가공회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연합기관임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유지되어 법인 공회가 취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처하기로 한다.
- ③ 충청남도에서 온 공문에 따라 지금까지 노력한 것처럼 오창우 이사장과 개편위 이사들을 설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의결을 하여 법인 취소 등의 행정절차로 가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 및 소송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다.
- ④ 개편위 오창우 목사와 개편위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충남도청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사들의 직무유기 및 해태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법인 취소 및 해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로 결의하다.
- ⑤ 한국찬송가공회의 21세기 찬송가의 저작권의 유지와 예정출판사의 출판권을 확인하고 잘 지켜가기로 결의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2023. 1. 4.(수) 11:00

☞ 장 소: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충청남도에서 온 공문에 따라 오창우 이사장과 이사회 개최를 합의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새찬위는 기본재산을 인정하기로 결의하다.

- ②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2건 및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청리로의 충남도청의 요구에 대한 이사들의 임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의 책임 등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땅히 이사들의 임무에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하다.
- ③ 출판권 대법 승소와 이사가처분 고법 최종 승소 되었으나, 현재 진행되는 형사 건에 대해서 보고받고, 예장출판사와 협력하여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다.
- ④ 개편위 오창우 목사와 개편위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충남도청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사들의 직무유기 및 해태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법인 취소 및 해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로 결의하다.
- ⑤ 새찬위와 직원 일동이 공문을 보낸 대로 대한기독교서회의 불법출판물 문제와 공회 자본(자)금을 압류하고 집행한 일에 대하여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다.

3. 주요 사업 및 결의내용

- 1) 한국찬송가공회가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찬송가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주도로 참여하기로 하다.
- 2) 저작권 및 출판 계약 관련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여러 재판에 잘 대응하여 한국교회 성도들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하다.
- 3) 찬송가 음원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업 및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찬송가 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한다.
- 4) 한국찬송가공회와 관련된 재판에 법무법인을 통해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찬송가 발행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대응한다.
- 5) 한국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찬송가를 출간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 진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 6) 최근 공회 관련 문제와 경과
 - (1) 1981년 설립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통일찬송가’를 통해 한국교회 하나의 찬송가를 보급하여 한국교회에 기여를 크게 하였다. 그리고 2006년 ‘21세기 새찬송가’를 발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찬송가 출판 보급에 앞장서 왔다.
 - (2) 2008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설립됨으로 갈등이 있어 한국교회의 염려가 있었으나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 (3)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40여 년간 설립 시부터 양 위원회인 새찬송가위원회측과 개편찬송가위원회(한국찬송가위원회, 이하 개편위)측 소속 교단들이 모여 공동 운영(공동 이사장제)을 해왔다. 이러한 설립 정신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정관은 전체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또한 과거 40여 년간의 역사가 증명한다.
 - (4) 그런데 공회 정관 8조에 의해 새찬송가위원회측 교단 중 합동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를 받지 않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설립 정신과 공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 (5) 이는 개편위 측 통합교단 이사들을 중심으로 되어진 일이었다.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연합사업에 분란을 야기한 것이다.
 - (6) 개편위원회측(통합교단 이사들 중심)은 이에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재판정까지 끌고가서 합동



교단 파송 이사들은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새찬송가위원회측 합동교단이 파송한 이사들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 (7) 예정출판사는 한국찬송가공회와 계약서(정관, 합의서)에 의거하여 출판을 해왔다.
- (8) 그런데 대한기독교서회는 자신들의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려고 예정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또한 예정출판사가 대법원(가처분)에서 승소하였다. 현재 대한기독교서회는 예정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등 소송(본안)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9) 현재 공회는 충남도청과의 법인취소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인취소 집행정지가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충남도청과의 관련 재판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 (10) 찬송가는 한국교회의 자산이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설립 시의 공동 운영의 정신이 잘 유지되어야 하며 상호 존중의 연합을 통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